

[사 건 명] 행심 2014-25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 부존재 결정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도서관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11.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존재』 결정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2014.11.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0년 6월 ○○과 ●●’ 라는 제목의 글을 2012년 ◇◇교도소에서 ◆◆군 11개 읍·면장, 각 마을 이장, 부녀회장에게 발송하고, ◇◇ 교도소 출소 후 ◆◆ 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내부사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11.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1.24. 피청구인의 정보 부존재 통지에 불복하여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고,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12. 2.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 건을 이송하였으며, 2014.12.12.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위원회로 청구 건이 이송되었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이 ◇◇교도소 수용중에 ◆◆군수, ◆◆군 전체 마을 이장, 부녀회장 및 11개 읍면조합장에게 보낸 8개 항목의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도서관에도 같은 사례가 있는지 사실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도서관에서 정보부존재 통보를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III.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해 ○○도서관에서 작성·취득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청구내용에 대하여 아는 바 없기에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 것이고, 2014.11.13. 피청구인의 정보 부존재 결정은 적법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2. 판 단

-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4.11. 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11.13.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판단

1) 먼저 처분의 근거 및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판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피청구인은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